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6. 7.
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10월 1일, 정부

나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
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5.11.7.) 상정, 제안설명,
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원회부

제434회 국회(임시회)

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4.28.) 상정, 축조심사,
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435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6.5.12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
찬반토론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정부)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·시행하는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.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이정은 수석전문위원)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,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법률에서 정책 대상을 ‘학생’으로 한정하여 명시함에 따라 ‘학교 밖 청소년’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.¹⁾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‘학교 밖 청소년’이란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, 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

1) 법제처 보도자료, 학교 밖 청소년과 청각장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욱 두텁게 보장합니다, 2025. 9. 30.

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하며, 2023년 기준 16만 6,500여 명으로 청소년 인구(6~17세) 대비 약 3.0%로 추정됨.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, 지원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.²⁾

이에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임.³⁾

현행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‘학생’에 대한 학습기회 확대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이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서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님.

그러나 ‘학교 밖 청소년’이라는 취약 계층을 특별히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지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보임.

2)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, 지원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3) 참고자료: 동일 취지 정부 제출안(9건)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윤준병)

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,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